

##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-093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제3항,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12.15.

국가기술표준원장

###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-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(WTO/TBT, IECEE)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1)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

| 순번 | 구분 | 안전기준 번호       | 안전기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개정 | KC 60335-2-29 |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<br>제2-29부 :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|

##### 2) 주요 개정 내용

-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 → 고시·공고)

#### 3. 의견제출

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- 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※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 소 :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(우 27737)  
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- 전화번호 : 043-870-5447
- 전자우편 : hyerim1@korea.kr